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08
----------	------

발의연월일 : 2021. 3. 22.

발 의 자 : 정일영 · 김교홍 · 김수홍
김진애 · 송기현 · 양정숙
윤후덕 · 이광재 · 이탄희
최기상 · 허종식 · 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설립과 운영에 상당한 국고가 소요되며 대규모 인력 및 시설이 요구되는바 공공기관 간 기능의 유사·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간에 이미 개방되어있거나 시장경합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등을 공공기관 신설을 통해 공적 부분에서 독점하게되면 민간분야를 위축시켜 민간분야 위축 및 시장기능 왜곡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입법부 내 국회의원 발의 법안·정부 제출 법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구 사업 민원 해소 또는 주무부처의 암묵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기관 신설법안의 발의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법안이 가결되어 기관이 신설되거나 분절되는 경우가 늘어나 2007년 298개였던 공공기관은 현재 340여 개에 이르고 있고 신설기관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기존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과도한 중복 신설을 예방하고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을 충실화하여 제도·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설 및 운영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국고 수반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이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또는 정부 내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된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되도록 하며, 그 법률안을 심사 또는 제안하는 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3조의3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기관 신설 관련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 또는 제안하는 위원회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 또는 제안하는 위원회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위원회와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 신설 관련 법률안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3조의3(기관 신설 관련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 또는 제안하는 위원회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되어야 한다.</u> <u>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u> <u>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u> <u>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u>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 또는 제안하는 위원회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위원회와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8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